

지방계약법령의 조문별 해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최두선



지난해 12월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부터 31조까지 조문별 해설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도 제32조부터 설명하기로 하겠다.

(영)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 13조 제1항을 준용 한다

(규칙)제35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영제3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입찰과 동일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면허나 자격은 수의계약이나 입찰모두 동일하게 갖추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제35조 규정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은 입찰과 동일한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자격이나 요건은 경쟁 입찰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 내용 ·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33조 (입찰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와 영 제33조는 입찰 공고에 관한 조문이다. 일반적으로 입찰은 공개적으로 알리어서 많은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되 그 수단이 통지와 공고라고 할 수 있다. 통지의 경우에는 지명입찰의 경우에 활용되는 방법인 반면에 공고는 일반적인 입찰에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영 제33조에서 입찰공고는 일반적으로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정보 처리장치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시스템 (G2b라고 함)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의 규정은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하여 공고내용이 잘못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앞뒤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연장하여 입찰자들의 권리와 편의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규) 제36조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을 우선한다.



규칙 제36조의 규정은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제된 내용과 첨부 파일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상 첨부화일의 공고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게시일에 관하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날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보처리장치의 게시일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입찰 참가 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참가 통지서에 의한다.

영 제34조의 규정은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공고에 의하지 않고 개별사업자에게 입찰참가 통지서를 보내어 입찰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규칙 제37조의 규정은 영 제34조의 방식으로 입찰참가를 통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입찰 참가 통지는 현행 자치단체에서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공사 등이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입찰공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07·9·20〉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07·9·20〉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07·9·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⑤ 제43조 및 제44 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07·9·20>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07·9·20>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5조의 규정은 입찰공고의 시기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장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입찰공고의 기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는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등 공사의 금액에 따라 입찰자들의 준비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입찰공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입찰이라 하더라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입찰이라 하더라도 제안서를 만드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도의 경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을 실시토록 하였고 2010의



제36조의 규정은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며 입찰공고의 내용여부에 따라서 입찰의 방향이나 판도가 달라 질수 있으므로 입찰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경리관 또는 분임 경리관이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우선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1번 입찰에 부치는 사항은 입찰에 부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개요를 명시해야 한다. 즉, 공사의 경우 공사명, 위치, 공사의 규모 또는 물량, 공사기간,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용역의 경우에도 용역명, 위치, 사업량, 추정금액, 기초금액, 용역의 기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방파제 공사의 입찰공고문 예시를 들어보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사명 : 00도 00항 방파제 축조공사
- 나. 위치 : 00도 00군 00면 00리 000 번지
- 다. 사업량 : 물양장 500M
- 라. 추정금액 : 3,000,000,000원 (추정가격 2,70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00원)
- 마. 기초금액 : 2,985,000,000원
-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개월

2번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는 입찰의 장소와 일시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거의 전자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찰서의 접수 기간과 개찰일시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입찰공고에 명기하면 된다.

2.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10.2.17 (수) 09:00~2010.3.3(수) 10:00
-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10.3.2 (화) 18:00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0.3.3(수) 11:00 (○○도 입찰집행관PC)

3. 공사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현장설명을 실



경우에도 상반기 중에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 입찰을 실시토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4의2.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 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5.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그 입찰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입찰공고에 당해공사의 현장설명 여부,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일시와 장소, 현장설명자의 참가자격과 참가의무여부를 입찰 공고에 명기해야 한다. 예시를 들어보자.

3. 현장설명

- 가. 일시 : 2010. 2.16 (화) 10:00 ~ 12:00
- 나. 장소 : 00도 00분 00면 00리 공사 현장 부지
- 다. 현장설명 참가자격 :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갖은자 이어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하며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현장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 다. 동 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 공사이므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 됩니다.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3의2.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안내 설명을 위하여 입찰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제안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설명 장소와 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제안설명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나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무효 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의2 .제안설명

- 가. 일시 : 2010. 2.16 (화) 10:00 ~ 12:00
- 나. 장소 : 00도 00분 00면 00리 회의실
- 다. 참석대상 : 입찰참가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다. 제안 설명 의무 참가여부

제안설명에 참가하지 않는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고문에 기술하는 사항이라고 할수 있다. 우선 유의해야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내용이외에는 발주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외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면허(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거나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무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예를 든다면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종합면허는 토목면허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이다.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면허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은자가 그 자격이 된다.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다면 전문공사업 자격으로서 상하수도 설비업 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역의 경우를 살펴보자 설계나 감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업이나 감리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는 실적제한, 지역제한, 기술제한, 중소업자 제한, 시공능력 공시액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중복제한 금지원칙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여부, 제한범위(예를 들면 실적제한의 경우 50 억원 이하공사는 당해발주공사의 0.7배 이내) 등이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적정하게 제한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입찰참가 자격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4.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0000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면허는 당해계약목적물을 이행하기 위한 자격을 제한하게 되는 부분이다. 토목공사업 이므로 도로나 하천 또는 교량공사 제방공사 등에 해당되는 사업임을 알 수가 있으며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내용을 보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자”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나라장터(G2B)상에서 각서를 받고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있다. 동 내용을 입찰공고한 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제6호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정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의 세부평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기준에 대하여도 내용을 입찰공고에 적시해야 한다 사례를 보자

6.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1호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실시하며 서류제출기한은 문서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계약의 이행 예정기간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서 계약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계약이행 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거나 공시할 내용이 없으면 동 항목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본다.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는 요즘에는 나라장터(G2B)에서 전자적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로 입찰공고에서는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9.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규칙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됨을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찰 공고된 사례를 보자.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1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요즘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입찰 및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입찰공고되는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13. 입찰서 제출

- 가. 제출일시 및 개찰일시 등은 생략
- 나. 입찰서제출은 나라장터에 의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동 항목에서는 우선 공동계약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입찰만을 허용 할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해야 한다. 통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0억원이하)에는 단독입찰만을 허용하나 중대규모는 공동도급 방식을 입찰공고에서 명시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서도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계약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동계약의 형태에 대하여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분담+공도이행,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방식)형태 중에서 어느방식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또 하나는 공사입찰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발주청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므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의미가 없고 통상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주 계약자 공동도급은 2009년 1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10.1.1일부터 추정가격 2억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동도급에 관한 입찰공고의 사례를 보자

1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00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가 있는 업체가 차지하는 시공비율이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시공비율의 40%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5.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 입찰 등에 관한 사항 15항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격심사와 다르게 공개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

(일괄입찰의 경우)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입니다.
-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으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기준방식』에 의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기계 및 전기)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설계분야)

-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조경,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교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로 및 공항,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지질 및 지반
- 환경부문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기계부문 : 유체기계, 통신정보처리부문 정보통신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기계 및 전기)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대안입찰의 경우)

7. 입찰방법

- 본 공사는 대안입찰로 집행되는 공사이며, 대안법위는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원안 및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만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내역입찰(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로서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디스켓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에는 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내역서 모든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안(총공사)에 대한 내역서와 대안(대안공종 포함)을 제출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안(총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우리공단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입찰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사를 선정,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대안을 제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인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단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6.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 항목은 15번 항목까지 포함된 내용외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기준 등 각종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10년간 동일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일실적의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를 입찰 공고에서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이 경우 실적인정규모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규모 이상으로 인정규모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정규모가 과도하여 경쟁성이 없는 경우에는 70% 까지 규모를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발주하는 공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 70%까지 그 규모를 하향조정할 수 있다

- 업종별 실적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경영상태평가시 심사항목별 기준비율, 재난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영업활동 평가항목 적용여부, 용역실적의 인정 범위 및 기준규모 ,추정가격 2억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여부

위내용 이외에도 입찰공고를 통하여 알려야 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고에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 화일로 내용을 작성 하여 통보해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다음호에 계속하기로 한다. 

